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가단2005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2나4150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가단200528 판결

전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홍렬

피고1. B(개명 전 이름: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자필

변론 종결 2021. 12. 17.

판결 선고 2022. 2. 11.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D과 E 사이의 2018. 6. 25. 4,000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D은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 1/2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B와 E 사이의 2018. 6. 25. 4,000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 3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원고는 E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55920호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7. 5. 24. 'E은 원고에게 3,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6. 19. 확정되었다.

나. E의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로

E은 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F와 공모하여 2017. 5. 31. 그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G건물 제비층 H호에 관하여 사실은 F에게 채무를 부담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채무가 있는 것처럼 '채권자 F,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¹⁾

다. E의 4,000만 원 증여

F는 위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한 근저당권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 I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2018. 6. 25. 48,648,030원을 배당받았는데, E은 F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아 그 중 4,000만 원(1,000만 원권 수표 4장)을 아들인 피고 D을 대신하여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부동산(서울시 은평구 J건물 제1층)을 매도한 K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 D에게 4,000만 원을 증여하였다.

라. E의 무자력

위 증여 당시 E은 무자력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주위적 청구)

원고는 주위적으로 E이 2018. 6. 25.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B를 상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E이 2018. 6. 25. 4,000만 원을 증여한 상대방은 피고 B이 아니라 피고 D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D에 대하여(예비적 청구)

1)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2019. 9. 5. E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893 강제집행면탈 사건의 판결문을 교부받아 봄으로써 E이 피고 D에게 4,000만 원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나 제기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9. 5. E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893 강제집행면탈 사건의 판결문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판결문의 범죄사실은 E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거당권을 설정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였다는 것이지 피고 D에게 4,000만 원을 증여하였다는

것이 아닌 점, 위 4,000만 원에 대하여는 단지 위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E과 F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의 2020. 11. 25.자 대질조사에서 E은 4,000만 원을 전 처인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을 제4호증), 원고는 2021. 1. 7. E이 전 처인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증여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며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E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893 강제집행면탈 사건의 판결문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E의 피고 D에 대한 증여사실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처음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 소송대리인의 2021. 8. 16.자 답변서를 통해 2) E이 피고 B이 아닌 피고 D에게 4,000만 원을 증여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부터 1년 이내인 2021. 9. 10.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이 이루어졌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 D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하여 가) 사해행위의 성립

E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 D에게 4,000만 원을 증여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E과 피고 D 사이의 위 4,000만 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E을 대위한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허명욱

1) 이로 인하여 각 강제집행면탈죄로 E은 징역 10월의 형(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893,

2019노1294), F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1473, 2020노983)이 각 확정되었다.

2) '소외 E은 F로부터 건네받은 배당금 48,648,030원 중 4,0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은 없고, 다만, 당시 소외 E의 아들인 소외 D이 2018. 6. 20. 소외 K으로부터 서울시 은평구 J건물 제1층을 매수함에 있어 매매대금의 일부인 4,000만 원을 매도인인 소외 K에게 대신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입니다.....소외 E은 2020형제28147호 사건에 대한 대질조사 시에 F로부터 건네받은 배당금 48,648,030원 중 4,000만 원 가량은 피고와 아들에게 주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소외 E의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한 진술로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입니다.'